

조선시대 가옥규제 및 풍속

Rules and Customs on the Dwelling Houses in Cho-Sun Dynasty

박 선 희*
Park, Sun 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rules and customs on the dwelling houses in Cho-sun dynasty. In this paper, the size, adornment and direction of the dwelling houses was studied.

I. 머리말

조선조의 전통사회는 한정된 자연재료 및 왕권을 중심으로 엄격한 신분계층의 질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집에 대한 제반사항을 법적으로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회구조에 따라 각 인이 거주하는 가사(家舍)에 충급을 두어 자기 신분이상의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 조선시대 주거정책의 기본이었다.¹⁾ 이러한 주거정책의 기본내용은 가사제한(家事制限)이 주된 것이었으며 그 외에 장식에 관한 것이 부수적으로 있었다. 주남철(1980)과 신영훈(1983)은 조선조의 주택에 관한 연구에 가사제한을 부분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주로 척수내용에 따른 변화를 지적하였다. 조선조의 가옥규제

만을 전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으며 더욱기 풍속적 고찰을 한 예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조 경국대전에 나타난 가사제한 등의 제도적 내용 및 제도이행에 대한 풍속적인 측면을 집의 규모 및 구성과 치장 그리고 방위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물론 이것은 자료 자체가 지난 한계성에 따라 집의 물리적인 해석을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단지 고찰의 결과를 통해서 조선조인들의 집에 대한 의식 및 태도를 단편적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가옥의 규모

가옥에 관하여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세종때이었다. 물론 조선시대의 개국 및 한양천도에 따른 가대(家垈)의 제한은 있었으며, 이 때 태조실록에는 서인(庶人)은 2부(二負 : 78평), 9품에서 1품

* 전북대 가정교육과 부교수

1) 申榮勳, 〈建築〉, p. 393, 『한국사』 11권, 국사편찬위원회, 1977.

은 4부에서 35부(156-1, 365평)로 나타났다. 즉, 태조는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도성을 경영하면서 성내에 거주할 대소신민에게 신분에 따라 살림집의 터전을 나누어 주었다.²⁾ 도성안에서 나누어 줄 만한 집터는 모두 합하여 500결(結)정도였다. 백성들이 기거해야 할 집의 규모를 최소치로 정하고, 그 집이 들어설 수 있는 넓이의 대지를 정하여 2부로 한 것이다.³⁾ 그 후 예종 원년(1469)에 이룩된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급조가지조(絶造家地條)에는 서인은 같고 그 이상의 신분은 많이 축소되었다. 따라서 1, 2품은 절반이상의 규모로(15부 : 585평) 축소되었고, 대군(大君)과 공주(公主)가 태조때의 2품과 같은 규모의 정도로 줄어 들었다. 그러나 대지의 제한은 조선조 초기에만 언급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⁴⁾ 이는 당시의 한양의 여건 및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하여 일시적으로 정해놓은 것이며, 따라서 서울이외의 지역은 가옥이 차지하는 대지의 규모 제한이 별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가옥 규모에 대한 크기제한은 세종 13년(1431) 정월에 예조(禮曹)에 하교하기를

“가사제도(家舍制度)가 없어 백성들의 집이 귀족의 집을 지나치고 귀족의 집이 궁궐을 능가하는 정도로 치장하려 다투니, 상하가 넘나들어 참으로 외람되다. 지금부터는 임금의 친형제나 왕자, 공주의 집은 50간, 대군(大君)의 집은 거기에 10간을 더하고 2품이상은 40간, 3품이하는 30간, 백성의 집은 10간을 넘지 않게 하라. 주춧돌 말고는 다듬은 돌을 쓰지 말고 화공(花拱)을 구성하지 말며, 진채(眞彩)로 단청하지도 못하게 하여 검약을 힘써 지키도록 하라.”⁵⁾

2) 朱南哲, 『韓國住宅建築』, pp. 49-57, 일지사, 1980.

3) 申榮勳, 『한국의 살림집 상』, pp. 202-210, 열화당, 1983.

4) 申榮勳, 앞의 논문, p. 396.

5) 『世宗實錄』, 세종 13년 정월 丁丑條.

고 하였다. 즉 앞의 대지의 제한보다는 오히려 가옥의 규모를 간수로 제한하므로써 물질적인 자원의 억제와 신분상의 질서유지를 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뒤에 경국대전에 기록됨으로써 조선시대 500년간 하나의 전축법규로써 지켜지게 되었다. 여기서 간수(間數)를 제한한 것은 조선시대를 통하여 집의 크기를 일반적으로 간수로 하였고, 이 간(間)은 두 기둥사이의 길이 또는 네개의 기둥 안의 면적을 일컫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간의 개념은 일정치가 않아서 6척, 7척, 8척, 9척 심지어는 12척 정도도 모두 1간으로 보았고, 따라서 1간으로 표현되는 면적이 크기는 유통성이 많았다.⁶⁾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 간수는 물론 각 부재(部材)의 상한선 등의 세칙마련을 통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종 22년(1440)에 2차 개정, 세종 31년(1449)에 3차 개정을 하였다.⁷⁾

따라서 이 때에 첨가된 내용은 보나 도리의 길이, 기둥의 높이가 2차 개정 때에, 전·후 퇴의 크기, 행랑(行廊)의 크기 등이 3차 개정에 들어가 실제로 가옥의 크기를 제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사회경제가 안정되고, 국초(國初)의 긴장이 풀리자 사치하는 경향이 짙어갔다. 따라서 성종 9년(1478)에 다시 공조(工曹)에서 제한령의 개정을 품달하였다. 이러한 법제정의 변화 내용을 보면 첫째로 면적을 나타내는 간수(間數)의 제한은 초기(세종 13년)부터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둘째로 기둥높이(柱高)의 척수(尺數)는 초기에서 후기로 올수록 조금씩 증가하여 예전대 대군가(大君歌)에서 세종 22년 때보다 세종 31년에 약 1척 정도 증가하였고, 서인(庶人)에서도 세종 22년에 기둥높이(柱高) 7척이 세종 31년에 10척 5촌, 성종 9년에는 11척으로 되어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⁸⁾ 그러나 이러한 가옥의 간수에 따른 그 실제

6) 朱南哲, 『韓國의 建築美』, p. 156, 일지사, 1983.

7) 2차개정은 『世宗實錄』 권 90, 7월 丁卯條, 3차개정은 『世宗實錄』 권 123, 정월 丁未條에 나옴.

8) 朱南哲, 『韓國住宅建築』, p. 55.

적인 크기를 놓고 볼 때는 오히려 매우 검소했던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서인의 경우 10간은 거실공간 뿐만 아니라 광(廣) 등의 협간체도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령은 임란(壬亂) 이후부터는 유명무실해지기 시작하였다. 성종 자신이 계성군(桂城君)의 집을 지어주면서 법령을 어겼다. 이 후 왕자, 공주의 집들은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다. 그럼에도 역대 임금들은 가사제한에 대한 논의나 명령을 수시로 내렸다. 중종반정(中宗反正) 이후 기강확립에 몰두하게 된 조선조는 중종 10년(1515)에 법을 어긴 집의 색출을 한성부(漢城府)에 지시하였다. 이 때 적발된 법을 어긴 가옥(過制家)은 무려 280여 채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수도 믿을만한 것이 못되었으니, 당시의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이 스스로 아뢰어 실토하기를, 자기집의 간수도 40여 간이나 초과되었는데 집이 허술하여 법사(法司)에서 초계(抄啓)하지 않았다고 하였다.⁹⁾ 이렇게 가사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공주 뿐만 아니라 사대부 및 서인에 이르기까지 많이 있었음이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송와잡설(松窩雜說)』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는 5백년이나 되는 나라이다. 만가지 조목이 비록 갖추어지지 않았으나 선조(先祖)의 법은 그대로 지켜 감히 분수를 넘지 못하였다. 가사(家舍)에 대한 한가지 일로 말하건대 말엽에 국력이 쇠하여 장차 망할 때에 이르러서도 임견미(林堅昧)의 권세와 신돈(辛曄)의 간악함으로 호사를 극도로 하였으나, 그들의 집이 굉장하거나 화려하지 않았던 것은 국법을 꺼려서였다. 우리나라에는 세운 법이 더욱 엄하여 위로 공경에서 아래로 서인까지 가사의 간수에 모두 일정한 제도가 있었다. 혹 제도에 넘을 것 같으면 한성부에서 가끔 순찰해서 정해진 제도보다 넘은 간수는 허물어 버렸다. 나의 외삼촌 원상사(元上舍)의 집이 인왕산 및 내섬동(內瞻洞)에 있었다. 그 집 간수

는 지금 생각해 보니 많다 할 것도 없는데, 중종 31년(1536) 무렵에 정해진 간수 이상의 것이라 하여 여러차례 철거를 당했으니 국법이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중엽이래로는 나라에서 능히 금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법을 꺼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구름같은 처마아 드러난 집이 골목과 산등성이에 걸쳐 있었으며, 공경의 집은 궁궐과 비길만 하였다. 서인의 집은 관청과 같아 분수를 범하고 제도를 넘어 끌이 없었다. 그러다가 임진년 왜적의 난리에 도성(都城)안의 크고 작은 집들이 잿더미로 되었다.”¹⁰⁾

이 내용을 보면 고려시대에도 가옥의 규제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조선조의 가옥규제도 중종때 까지는 법정이외의 간수를 혀어 버릴 정도로 상당히 엄격히 지켜진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조 중엽이래의 기강해이는 12세의 명종(1545-1567)이 즉위한 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면서 외척에 의한 권력투쟁이 가열화되면서 였다. 자연히 왕권이 약화되었고 정치체제와 사회가 혼란해졌던 데에 그 원인을 들 수 있겠다. 이 시기에 사회기강이 이완되고 법의 통제가 소홀해지자 사람들이 집의 규모를 대폭 늘렸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건축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들 수 있다. 즉, 16세기 이후로 조영(造營)의 중심이 궁전건축이나 불교사원에서 사대부의 주택이나 사립의 서원으로 바뀌게 된다. 16세기에는 궁전의 신축이 없었고 불교사원도 신축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대토지를 소유한 사대부들만이 저택의 조영을 일으키고 있었다. 사대부의 대저택(大邸宅) 조영이 성해집에 따라 공장들은 조영사업이 부진했던 관청을 떠나 사대부들의 주택공사에 모여들게 되었던 것이다.¹¹⁾ 이러한 영향

10) 『大東野乘』 제56권, p. 185. 저자 이기(李既 : 1522-1604)는 선조조의 명신(名臣)으로서, 이 『송와잡설』은 제목 그대로 저자가 온갖 듣고 본 것을 차례없이 기록한 것이다.

11) 金東旭, 〈朝鮮時代 造營組織 研究 1〉, 『建築』27권 112호, pp. 46-51, 대한건축학회, 1983년 5/6.

9) 申榮勳, 앞의 책, pp. 208-209.

은 서인에게도 미치게 되어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도와 무관하게 집의 규모를 늘렸다고 보여진다.

임란후 인조 3년(1625)에 지은 정명공주가(貞明公主家)는 간수가 170여 간이나 되었고, 현종때에도 공주의 집을 새로 지었는데, 정침(正寢)만 하여도 30간수나 되는 대규모였다. 과열적인 전란을 치룬후 국가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었던 상황속에서도 일부 귀족들의 가옥의 규모는 오히려 커졌고 가사제한의 법제는 더 유명부실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갑진만록(甲辰慢錄)』에

“판서 홍사신(洪士信)은 난리 전에 동대문 안에 새 집을 지었는데, 화초를 많이 심고 못을 파서 연꽃을 심어 대단히 깨끗하였다. 난리 후에 옛 터에 다시 집을 짓되, 제도를 그 전보다 늘리고 화초나 나무, 돌같은 완상물을 평시보다 더욱 욕심내어 많게 하였다. 궤석(掛石)의 사이에도 떠풀 하나 없고……”¹²⁾

즉, 홍사신은 임란 이후 새로 지은 집을 전보다도 훨씬 아름답게 꾸몄다는 것이다. 가옥의 크기도 늘리고 특히 정원에 관심을 가지고 꽃이나 정원수 그리고 궤석 및 돌장식 등을 배치하고 심지어 인공연못까지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보면 그는 당시의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매우 사치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높은 취미와 심미안을 지니고 정서적 공간으로서의 전반적인 집의 구성계획을 반영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사대부들은 제도이상으로 집의 규모와 치장을 늘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지나치게 겸소한 경우도 있었다. 『월정만필(月汀慢筆)』¹³⁾에, “문경공의 집은 남부(南部)에 있었는

12) 『大東野乘』 제55권, p. 99. 『갑진만록』은 선조조의 문신 윤선각(尹先覺 : 1543~1611)의 저술이다. 선조조 중엽부터 광해군초엽에 이르는 동안의 시사에 관하여 쓴 기록으로 임진왜란후의 사회, 경제, 복식, 풍속 등에 관해 자세하다.

13) 『大東野乘』 제57권 p. 313. 이것은 조선조 선조조의 문신 윤근수(尹根壽 : 1537~1616)가 평소 보고 듣고 느낀대로 적어 모은 기록이다.

데, 그집을 광릉군에게 물려주었다. 그 행랑채는 세(草)로 이은 것이었는데 광릉의 대에 이르러서도 개조하지 않았으니 겸박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연산군때 한양 남산에 9만 9천 9백 99간이란 상상을 초월한 호화주택이 있다는 소문이 필도에 떠돌았었다. 그래서 서울에 오는 사람은 이 집을 구경코자 하다가 크게 실망하곤 했는데, 그 이유는 판서 홍귀달(洪貴達)이 허백당(虛白堂)이라는 당호가 붙은 단칸 초막, 즉 단칸방에서도 9만 9천 9백 99간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의 주거 철학, 곧 현상학적 공간이 그를 흡모하는 선비들의 입을 통해 구전되었던 것이다. 또한 세조때 이조판서 이승소(李承召)는 겨우 삼간되는 초가에서 살았는데 이웃이었고 친하게 지냈던 병조판서가 밀을 안듣고 호화주택을 짓고 말자 그와 상대를 안하고 모르는척 지냈다는 것이다.”¹⁴⁾ 이처럼 사대부 안에서도 선비로서 자처하는 사람들은 선비로서 지녀야 할 품격 등을 솔선수범하였고, 이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선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해동잡록(海東雜錄)』¹⁵⁾에 “유하정(柳夏亭)은 비록 신하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으나 단지 초당 한간 뿐이었다. 한번은 장마에 비가 새어 공이 우산을 받치고 가리면서 부인을 돌아보고, 우산 없는 집은 어찌 견디겠소?……”라고 하였다. 그 뒤, 유하정(柳夏亭)의 외종손인 이희겸(李希儉) 판서가 “집은 비를 막는데 죽하고 몸을 가리는 것으로 죽으며, 밥은 속을 채우면 죽하다. (家足以庇雨 衣足以蔽身 食足以充腸)”라는 신조로 위의 초당에서 청빈하게 살다 갔고, 임진왜란에 타버린 그 터에 다시 이희겸의 아들인 이수광(李睡光)이 두어 간 초당을 짓고 비우당(庇雨堂)이라 이름지어 격조높은 선비의 삶을 이어 받았던 것이다.

14) 李奎泰, 『韓國人의 生活構造』 1권, pp. 124~125, 조선일보사, 1984.

15) 『大東野乘』 제20권, p. 455. 『해동잡록』은 선조 때의 학자 권별(權讎)이 여러 자료를 모아 만든 방대한 편지이다. 이것은 『大東野乘』 19권에서 23권 까지 6권으로 나뉘어 수록되어 있다.

선비 가운데서도 격이 높은 선비를 ‘헛가리 선비’라고 불렀는데 헛가리란 가벽(假壁)집, 곧 요즈음 말로 판자집 선비를 일컬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조 선비들은 집을 절검하게 갖는 것이 청백(淸白)의 본으로 여겼다.¹⁶⁾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사실 인간의 극단적인 정신적 생활을 강조한 나머지 나온 실천윤리의 한 단면이므로 인간의 일상적인 의·식·주생활을 담아야 할 주거의 기본적인 기능은 상실된 것으로 직접적인 고찰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것을 보면, 위와 같은 선비들은 매우 드물었던 것 같다. 건축적인 측면에서도 이 유형은 오히려 원초형의 오막살이에 가까운 것으로 집의 문학 및 기술적인 발전이나 양식면에서 주목할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제도위반의 사례는 조선조 말에도 나타난다. 즉, 3.1운동의 진원지였던 서울 인사동 태화관은 인조가 등극하기 이전에 살았던 궁가(宮家)로, 규모가 사치스러웠는데 구한말 영의정인 김홍근(金興根)이 살았다 한다. 그 문하에 드나들던 한성 제일의 갑부 임상현이란 중인(中人)이 태화관과 똑같은 규모의 호화주택을 지어서 조정에 말썽이 되어 형조에서 헐려고 들자, 김대감은 지각없고 법도 모르는 중인의 짓이라고 집기 등을 고루 한 자씩 잘라 집높이를 낮추게만 하고 용서해 주었다고 한다.¹⁷⁾ 이러한 제도위반 유형은 절검을 중요시하는 조선시대의 사회윤리나 지도이념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의 발로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도 가옥규모에 대한 객관적 규제가 그리 엄격하게 작용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전술한 내용을 고찰해 보면, 조선시대 집의 규모는 종종이래의 정치 사회변화에 따라 기강확립이 무너지면서 왕족에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제도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제도의 불이행은 사회질서와 나라의 법적차원에서

는 문제가 되겠지만 기존의 가사체한은 최대치보다는 최소치에 의거하여 이 기준으로는 집이 생활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기가 곤란하지 않았을까 한다. 무엇보다도 유교사상의 남여유별에 의한 공간분화는 더 많은 간수가 필요했을 것이며 이것은 서인보다도 사대부가에서 그 필요성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영건축의 중심이 사대부가로 이동되면서 이러한 욕구가 새로운 집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지어진 사대부가의 집들은 다시 서인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조선조주택의 특성인 안채와 사랑채의 분화는 종종 아래 확립되어 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현재 남아 있는 유구중 의성 김씨 대종가, 월성 손동만씨가, 월성 향단, 월성 관가정 등이 중종전후의 집들로 조선조 후기의 평면과는 다른 특성들을 지니고 있음이 나타난다. 조선조 집들은 조선후기로 내려오면서 윤리나 신분보다도 경제력에 의해 사회가 운영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주거생활의 다양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된다.

III. 가옥의 구성과 치장

집의 규모 뿐만 아니라 집을 구성하거나 치장하는 재료도 신분에 따라 허용이 되기도 하고 제한도 하였다. 즉, 세종 11년에 나타난 단청(丹青)금지의 기록이 그 효시이다. 세종 11년 정월에 “공조(工曹)에 교지를 전하기를, 지금부터 궁궐 외의 공사옥우(公私屋宇)에는 주칠(朱漆)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고, 이 후 세종 11년 9월에 이를 위반한 가옥은 참의(詹擬)로서 다스렸다.¹⁸⁾ 단청의 기본적인 5가지 색인 청, 적, 황, 백, 흑 중에서 붉은 색만을 금하였는데 이 붉은 색은 그릇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그외의 4가지 색은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세종 13년에 앞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살림집에서는 주춧돌을 포함하여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화공(花拱)이

16) 李奎泰, 앞의 책, pp. 123-124.

17) 李奎泰, 앞의 책, pp. 122-123.

18) 『世宗實錄』, 세종 11년 정월 辛未條.

라는 공포(拱包)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진채단청(眞彩丹青)¹⁹⁾을 금지하였다. 화공(花拱)과 초공(草拱)은 일종의 공포로 대들보를 받치는 보아지의 앞머리를 치장한 모습을 말하는데, 화공은 앞머리를 꽂모양으로 새김질한 것이고 초공은 당초무늬 등을 새김질한 것이다. 개인집(私家)에서는 이것을 쓸 수 없다고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다.

그러나 『음애일기』(陰崖日記)에

“당시 벼슬에 있던 자들이 다투어 집을 수리하여 지극히 화려하고 사치함을 험써서……”
20)

라는 기록과, 『문소만록』(聞韶慢錄)에

“우리 조종조(祖宗朝)는 역대로 풍속이 견소한 것을 중상해서, 궁궐에도 오토(五土)로²¹⁾ 단청하고, 대궐도 낮고 좁은 것을 면하지 못했다. 사대부의 집도 모두 작고…… 40—50년 이래로는 권간(權奸)들이 권리로 잡으면서부터 탐욕을 부리는 기풍이…… 큰 집은 백여 간을 짓고, 작은 집도 60—70 간에 이르렀으며, 그리고 주춧돌을 다듬고 기둥을 높이 세우며, 추녀는 날아갈듯이 하늘에 치솟게 하였다. 단청에 반드시 진한 채색을 썼고, 의복과 음식도 지극히 사치하여 천한 아랫사람일수록 더욱 심했다.”²²⁾

19) 진하게 쓰는 불투명한 원색적인 채색의 단청을 말함.

20) 『大東野乘』 제6권, p. 143. 『음애일기』는 조선전기의 문신 이자(李籽)가 종종 4년(1509)에서 종종 11년 병자 12월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21) 본래 五土란 다섯가지 토지, 즉 산림(山林), 천택(川澤), 구릉(丘陵), 분연(墳衍), 원습(原濕)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청, 적, 황, 백, 흑의 5채 단청을 뜻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22) 『大東野乘』 제55권, p. 36, 『문소만록』은 『갑진만록』의 저자 윤국영이 지은 것으로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일어난 국내의 일들을 사실 그대로 기술한 수필집이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이것을 보면 규모와 마찬가지로 집에 대한 치장도 많이 했던 것 같다. 기둥을 떠받혀주는 주춧돌의 경우 다듬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비교는 집의 외관상의 격조에서 큰 차이가 남은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전히 있다면 다듬는 것이 집의 구조적 안정감에서도 좋았을 것이다. 또한 가옥에 진채까지 사용하여 집의 외관을 화려하게 장식했음도 볼 수 있는데, 오늘날 남아 있는 조선조 가옥의 유구중에서 단청을 한 예가 있다. 경상북도 월성군에 있는 독락당(獨樂堂)이 그것이다. 이 독락당에 대하여는 근사재(近思齋) 박계현(朴啓賢)의 십육영(十六詠)이라는 시에 “단청도 조출한 독락당에……”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23) 이로써 일반가옥에도 단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독락당의 예를 보면 채색이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을 경우의 가옥단청은 오히려 한옥건축의 아름다움을 돌보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외에 특수한 재료를 사용하여 논란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오산설립초고』(五山說林草藁)에 보면

“성종때 장인 중에 은대(銀臺)에 적을 가진 자 있어, 자단(紫檀)으로 마루를 깔았다. 임금이 듣고 면대하여 묻기를, ‘경이 단향(檀香)을²⁴⁾ 가지고 집을 지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하여 사실인즉 장인을 치도록 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²⁵⁾

이렇듯이 집의 치장과 구성재료에 있어서 그 정도가 지나치면 임금이 직접 문초한 경우도 있었다. 국법에 명시된 집의 제도가 아니라도 귀하고 한정된 재료의 보호와 물력의 낭비 그리고 신분에 맞지 않는 지나친 사치 등을 규제하고 있었던 조선

23) 閔周冕, 『東京雜記』, p. 387, 대양서적.

24) 紫檀, 白檀 등의 향나무의 총칭.

25) 『大東野乘』 제5권, p. 49. 선조때 문사로서 이름 높았던 車天輅의 수필집이다.

시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조선조주택은 목조로 이의 큰 취약점의 하나는 화재이다. 이런 화재에 대하여 초가집은 특히 매우 약했으므로 조선초기에는 도성건설에 맞추어 기와집짓기를 장려하였다. 태종 6년에 해선(海宣) 이란 스님이 이 문제를 위하여 발벗고 나선 바, 태종은 궁궐과 관아에 기와를 공급하는 와요(瓦窯) 외에 별와요(別瓦窯)를 만들어 기와를 대량 제작 하게 하였다. 그는 또한 백성들의 경제능력을 감안하여 대금을 분할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기와의 보급에 힘썼다.²⁶⁾

그러나 초가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기와집이 하나의 동경의 대상일 뿐이었으므로 조선후기의 실학자 홍만선(洪萬選 : 1643-1715)은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 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시골집(田家)은 재산을 비축할 여유가 없어 기와를 이울 수 없는지라 화재가 빈번하다. 만약 가력(家力)이 늘어 다소라도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새 기와를 구워야 한다. 완전히 구워진 것을 지붕에 쓰고 덜 구워진 것은 담장에 이으면 좋다. 또 한번 사용했던 기와를 얻어다 이는 방법도 좋다.”

이와 같이 지붕의 재료는 국가이익의 측면에서 신분과 관계없이 기와를 권장하여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남아 있는 조선시대의 상류가옥들은 행랑담에 이르기 까지 모두 기와이며 특히 솗을대문의 독특한 양식은 매우 아름답다. 솗을대문은 본래 종2품 이상의 신분이 타고 다니던 초헌(朝軒)이라 부르는 외바퀴 수레를 탄 채로 드나들 수 있게 높이 만든 것이나 초헌을 타지 못하는 양반의 집 들도 이를 채택하여, 결국 양반집을 상징

하는 대문양식이 되었다.²⁷⁾

이상과 같이 조선조에서는 공포와 진채단청을 금하였으나 역시 앞의 규모에서와 같이 종종이래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에 들어와 더욱 발달된 건축기술중의 하나는 공포양식으로 이것이 일반가옥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여기에 단청까지 포함으로써 집의 외관은 매우 화사하고 아름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가옥의 방위

조선시대의 가옥의 배치나 방위는 전반적으로 풍수지리 및 도참사상 그리고 음양오행설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간접이 방식이 매우 복잡다단하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풍수(風水)에 관련된 양택(陽宅) 연구는 그것만으로도 방대한 연구주제가 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것을 일단 재쳐놓은 상태에서의 집의 방위 설정에 관한 풍속적인 기록들을 참고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송와잡설』에 보면,

“왕궁(王宮)과 법전(法殿)은 남향을 하는데, 그것은 정사를 듣고 조향(朝鑾)을 받는 바른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정부와 추부(樞府), 육조(六曹) 등 여러 관청이 모두 광화문 밖에 벌여 있어 동쪽에 있는 것은 서쪽을 향하고 서쪽에 있는 것은 동쪽을 향해 있다. 한갓 관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대부의 집이나 대청마루도 모두 동향이나 서향으로

27) 유득공(柳得共)의 『경도잡지(京都雜誌)』를 보면, “사대부는 그의 집의 문을 높고 크게 할 수 있으나 서민들은 금지되어 있다. 집앞에 부연(附緣)을 달고 그 끝을 끌어내어 호로산(葫蘆山)이나 나는 학의 모양을 만든다. 이것을 노송취병(老松翠屏)이라 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도 속을대문은 양반사대부들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6) 申榮勳, 앞의 책, p. 219-223.

되어 있는데, 특히 남향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비록 집에 있을 때에라도 분수에 넘치게 남쪽을 향해 앉을 수 없음이었다. 도성안 고가세족(故家世族)의 집들이 바둑돌같이 벌여 있고 별처럼 흩어져 있으나 모두 북향하여 있었는데, 종종이후로 기강과 법도가 점차 해이해지고 인심이 나날이 사치하여져 분수를 범하고 예도를 넘는 일이 끝이 없어, 가사(家舍)의 좌향(坐向)이 남인가 북인가를 물을 것도 없었으니, 세도(世道)가 점점 못하여지고 인심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⁸⁾

여기에서 보면 조선조 초기까지는 왕권중심의 철저한 생활이 주택에서도 반영되어 집의 좌향을 궁궐이 있는 쪽을 향하게 함이 일반적 풍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앞의 규모 등에서와 같이 종종이래로 관습적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또한 『문소만록』에도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사대부의 집은 모두 작고 마루는 반드시 북쪽으로 향했으나 아직 남아있는 옛날 집을 보면 알 수 있다. 4,50년 이래로는 권간(權奸)들이 권리를 잡으면서부터 탐욕을 부리는 기풍이 크게 번져서 방을 꾸미는 데도 모두 남향하여 밝은 것을 취하고…….”²⁹⁾

이 글의 저자인 윤석각이 충청도 관찰사로 있을 때 쓴 것으로 보아 그전에는 한양 이남의 집들은 좌향이 보통 궁궐을 향해 북향이었던 관습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질서의 쇠퇴는 가옥의 좌향을 실리적인 측면에 돌리게 하는데 오히려 기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집에 채광이 잘 들어 온다는 것은 굳이 풍수나 음양사상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그것의 좋은점을 쉽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래서 거주공간으로는 남향이 좋은 줄 알면서도 궁궐쪽으로 북향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의 좌향에 대해서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인가의 방옥(房屋)은 남향이 가장 좋고, 동향이 그 다음으로 좋으며, 북향이 그 다음이다. 절대로 서향으로 지어서는 안되는데, 그 까닭은 서쪽방향으로 문을 향하게 하면 이롭지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³⁰⁾

“사람이 사는 집의 방과 거실은 반드시 남향으로 하여 양기(陽氣)를 받아야 한다. 집이 남향이거나 서향이거나 동향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사람이 거주하는 방과 거실의 창은 모두 남쪽으로 열어야 한다.”³¹⁾

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록들은 보면 음양오행설이나 풍수사상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용어로 쓰여졌지만 동시에 여기에는 경험에 따른 실용적인 고려가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계절적 조건상 특히 추운 겨울의 북서풍내지 서풍을 막지 않으면 매우 불리한 주거공간이 된다는 사실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이러한 생활의 지혜는 봉건사회에서의 왕에 대한 충절보다 더 절실했기 때문에 나라의 기강이 소홀해지자 전국적으로 퍼져버리게 된 것 같다. 여기에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명분으로 등장한 실학사상이 더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기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 전반기의 실학자였던 서유구(徐有矩 : 1764-1845)는 그의 『임원경제지』에서, “거실을 만듦에 있어서는 창과 문을 밝

28) 『大東野乘』 제56권, pp. 172-173.

29) 『大東野乘』 제55권, p. 36.

30) 『林園經濟志』 相宅志 제1(營治).

31) 위와 같음.

게 하고 바람을 잘 통하게 함이 마땅하다. 만약 네 벽으로 둘러 쌓여 어둡고 꽉 막혀 있으면 마침내는 귀신이 불어 사는 곳이 될 것이다.”³²⁾라고 하여 집의 구조에 있어서 내부공간도 밝게 만들어 주는 것(晝光性)과 통풍성을 중요시하는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V. 맷음말

『경국대전』에 기록된 조선조 가옥의 제도는 아주 간략하고 소박했던 것이었다. 즉, 신분계급에 따른 집의 간수 및 구조적 요소의 척수제한이 기본사항이었으며 서인에 대하여만 다듬은 주춧돌사용과 화공, 초공의 금지를 명하였다. 또한 사찰을 제외한 가옥에 신분을 막론하고 전채사용을 금하였다. 이러한 가옥 제도는 가장 최소한의 기준치를 제시한 것으로써 그 시행내용을 보면 법적인 규율로써 보다는 기본적인 신분계급의 질서유지와 점약한 물질생활에 대한 척도로써 그 가치가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집의 좌향은 제도가 아닌 풍속으로서 조선조 초기까지는 궁궐이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풍속과 집의 법적 제도는 종종이래로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정치사회의 기강해이에 따른 것이었으나 주택의 문화 발전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동기

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즉 16세기에 들어서서 조선조의 조영중심이 궁전 및 불교건축에서 사대부의 주택등으로 옮겨지면서 상류주택의 건설이 활발하게 되었다. 여기에 유교사상의 도입 및 욕구에 따른 실제적인 공간의 분화가 반영되면서 집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서 치장에 대한 욕구도 늘어나 공포 및 단청까지하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향나무 마루를 사용한 예도 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집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건물을 에워싼 외부공간에도 관심을 갖고 정원수, 화초, 돌, 궤석 등의 배치와 인공연못을 만든 집이 조선조 초기에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집의 좌향 역시 실리적인 면에서 공간의 주광성과 통풍성을 반영하게 되었다. 여기에 다시 실학사상이 첨가되면서 집의 구성은 점차 실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었던 것이다.

참 고 문 헌

1. 『經國大典』
2. 『大東野乘』 1권~72권, 민족문화추진회, 1982.
3. 申榮勳, 『韓國의 살림집』, 열화당, 1983.
4. 尹張燮, 『韓國建築研究』, 동명사, 1984.
5. 尹張燮, 『韓國建築史』, 동명사, 1976.
6. 朱南哲, 『韓國住宅建築』, 일지사, 1980.
7. 朱南哲, 『韓國의 建築美』, 일지사, 1983.

32) 위와 같음.

